

2021년도 제5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

I. 회의 개요

- 일 시: 2021. 1. 14.(목), 10:30
- 장 소: 한국저작권보호원 회의실
- 참석자: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제4분과위원회 위원 3명 참석
 - 심의위원: 신창환(분과위원장), 김연희 위원, 심장섭 위원
- 회의 진행순서 및 안건

1. 개회선언 및 인사말씀 분과위원장
 2. 전차(제2021-1호) 회의록 확인 및 공개여부 결정 분과위원
 3. 안건상정 분과위원장
- <의결안건>** ※ 안건 검토 보고: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오진해 전문위원
- 제1호: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
4. 폐회선언 분과위원장

II. 회의내용 및 결과

1. 의결안건

○ 제1호: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

- 주요내용: 온라인상의 불법복제물등에 대한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 2,869건(안건번호 제2021-3792호~5199호)

- 회의결과: 안건번호 제2021-3792호~3798호는 웹하드 사이트에서 게시자가 영리 목적으로 불법복제물을 전송하고 있는 점, 심의대상 게시물이 해당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가결함.

안건번호 제2021-3799호는 심의대상 게시물의 권리주장 저작물 사진은 연출된 화보 사진으로 저작물성이 인정될 여지가 크나, 해당 사진은 제품 판매를 위해서만 이용되는 것으로 해당 사진저작물 자체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명확하지 않은 점, 심의대상 게시물이 판매하는 제품에 대하여 위조 등 불법성의 여지가 발견되지 않는 점, 심의대상 게시물에 대해 삭제 또는 전송중단의 시정권고가 이루어질 경우 제품 판매자의 영업 활동이 제한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심의대상 게시물은 시정권고의 대상으로 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 부결함.

안건번호 제2021-3800호~3804호는 블로그 및 카페 이용자가 일본 애니메이션 및 드라마를 블로그 또는 카페에 게시한 사안임. 심의대상 게시물이 해당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가결함.

그 외에 불법복제물등에 해당되는 심의안건 게시물 2,821건은 삭제 또

는 전송중단의 시정을 권고하고 복제·전송자에 대하여는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되,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의결함.

Ⅲ. 회의 의사록

1. 개회선언

- 신창환 분과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1년 제5회 저작권보호심의 분과위원회 개회를 선언함.

2. 전차(제2021-1회)회의록 확인 및 공개여부 결정

- 신창환 분과위원장: 전차 회의록 공개여부에 관해 의견을 구함.
- 오진해 전문위원: 제1호 안건인 시정권고 심의 회의록 내 저작물명 등이 노출된 부분의 공개 여부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람. 위원님들의 편의를 위해 비식별 처리 대상으로 보이는 부분은 취소선으로 표시해 두었고, A 위원님의 회의록 수정 요청에 따라 수정하였음.
- A 위원: 저작물명 등은 심의대상 게시물이 특정될 수 있으므로 비식별 처리하고 나머지 부분은 공개해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됨.
- B, C 위원: 위원님 의견에 동의함.
- 오진해 전문위원: 제2호 안건 회의록은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회의공개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전체 비공개하고 쪽수만 기재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음.

- 신창환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전차 회의록에 대해 이상 없음을 확인하였고, 시정권고 심의 회의 부분에서 저작물명등 심의대상 게시물을 추측할 수 있는 부분을 비식별 처리하여 공개함. 제2호 안전 회의록은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회의공개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전체 비공개하고 쪽수만 기재하여 공개함.

3. 안전상정

o 제1호: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의한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

- 오진해 전문위원:(심의안건의 저작물명, 저작권자 등 목록을 제시하면서)심의위원들께서는 PC에 접속하여 금일 심의안건의 저작물명, 저작권자, 온라인서비스제공자 등 목록을 직접 확인해 주시기 바람. 위원들께서는 제척 사유 해당 여부를 밝혀 주시기 바람.

- A, B, C 위원: 해당 없음.

- 신창환 분과위원장: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람.

- 오진해 전문위원: 금일 심의안건은 19개 온라인서비스 이용자들이 게시한 2,869건의 복제물에 대한 시정권고 심의임. 안전번호는 제 2021-3792호~5199호임. 관련 법령과 심의 기준은 검토보고서로 대신 하겠음.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 안전번호 제2021-3792호~5199호는 실명과 익명의 민원인이 신고한 건임. 웹하드 사이트에서 만화 ‘★★★★★★’, ‘★★★★★★★★★★★★★★★★’, ‘★★★★★

★★★★★★★★★', '★★★★', '★★★★★★★★★★'를 50포인트에 각각 판매하고 있는 사안임. 총 7개의 게시물임.

(제2021-3792호의 채증자료를 보여주면서)해당 저작물을 50포인트에 판매중이며, 총 1~10권을 zip 파일로 제공하고 있음. 정식 발매 만화를 불법복제한 것으로 보임.

(제2021-3793호의 채증자료를 보여주면서)해당 저작물을 50포인트에 판매중이며, 총 1~10권을 zip 파일로 제공하고 있음.

(제2021-3794호의 채증자료를 보여주면서)해당 저작물을 50포인트에 판매중이며, 총 29화를 zip 파일로 제공하고 있음. 권리자사 '★★★★★'의 워터마크도 보임.

(제2021-3795호의 채증자료를 보여주면서)해당 저작물을 50포인트에 판매중이며, 총 46화를 zip 파일로 제공하고 있음.

(제2020-3796호의 채증자료를 보여주면서)해당 저작물을 50포인트에 판매중이며, 총 20화를 zip 파일로 제공하고 있음.

(제2020-3797호의 채증자료를 보여주면서)해당 저작물을 50포인트에 판매중이며, 총 33화를 zip 파일로 제공하고 있음.

(제2020-3798호의 채증자료를 보여주면서)해당 저작물을 50포인트에 판매중이며, 총 33화를 zip 파일로 제공하고 있음.

게시자가 영리 목적으로 불법복제물을 전송하고 있는 점, 심의대상 게시물이 해당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면 심의대상 게시물에 대한 시정권고를 하는 것이 타당하여 가결 의견으로 검토하였음.

(해당 안전표를 제시하면서)불법복제물명, OSP명, 게시자명, 특이사항 등은 검토보고서의 안전표에 정리되어 있음. 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람.

- 신창환 분과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모니터링 자료, 심의대상 게시물, 그리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바탕으로 안전번호 제2021-3792호~3798호에 대해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참석 위원 전원: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함)
- A 위원: 해당 저작물은 시중에서 판매 중인 만화와 심의대상 게시물이 해당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시정권고의 가결 의견임.
- C 위원: 정당한 권리자가 아닌 자가 불법복제물을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고 있어 시정권고의 요건을 충족함. 가결 의견임.
- B 위원: 이견 없음. 가결 의견임.
- 신창환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안전번호 제2021-3792호~3798호는 게시물에 대해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는 것을 가결함.
- 오진해 전문위원:(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안전번호 제2021-3799호는 권리자가 신고한 건임. 민원인 '★★★★'은 온라인마켓에서 위조상품을 모니터링하는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 자임. 민원인은 '★★★★★★★★★★★★★★★★'의 위임을 받아 위와 같이 위조상품을 모니터링하던 중 오픈마켓 '★★'의 병행수입상품인 심의대상 게시물을 발견하고 보호원에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보임.

(오픈마켓 웹사이트 페이지를 제시하면서)민원인은 병행수입상품인 심의대상 게시물의 광고사진에 대해 민원을 제기하였음.

- A 위원: '★★'이 오픈마켓이고 판매자가 별도로 존재하는 것으로 이해됨.

- 오진해 전문위원: 그러함. 병행수입상품으로, 상품자체가 위조상품인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임. 민원인이 제기한 민원은 상품판매 게시물 내의 광고사진임. '★★★★'의 광고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취지로 신고한 사안임. 광고사진이기 때문에 저작물성을 인정하는 것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임.

쇼핑몰 게시물에서 타인의 사진을 이용한 민원에 대해 우리 심의위원회는 일반적인 상품판매 게시물에서 단순히 타인의 사진 저작물을 게재한 사항에 대해서 상품 판매 목적으로 게재한 것은 해당 사진저작물 자체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명확하지 않은 점, 심의대상 게시물이 판매하는 제품에 대하여 위조 등 불법성의 여지가 발견되지 않는 점, 심의대상 게시물에 대해 삭제 또는 전송중단의 시정권고가 이루어질 경우 제품 판매자의 영업 활동이 제한될 수 점, 심의 위원회는 대심제가 아닌 점 등을 고려할 때 심의대상 게시물은 시정권고의 대상으로 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부결로 의결하고 있음.

예외적으로 'EV BOX' 판매 게시물의 경우와 같이 그 자체가 불법복제물이거나, 불법복제물의 이용을 촉진하는 제품을 판매하여 저작권 침해를 방조하는 게시물은 시정권고를 가결하고 있음. 하지만 해당 안건은 그렇지 않은 것으로 보임.

- A 위원: 'EV BOX'가 무엇인지?
- 오진해 전문위원: 불법 셋톱박스의 일종임. 전 세계의 방송이나 비디오를 무료로 시청할 수 있음. 'EV BOX'의 경우 그 판매행위로써 불법복제를 방조하고 있는 것이므로 판매 게시물을 시정권고 가결하고 있음.
- B 위원: 해당 안건은 광고사진에 나오는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지?
- C 위원: 광고사진에서의 제품이 아닌 별도 제품을 판매하는 것으로 보임. '★★★★'의 정품임을 강조하기 위해 삽입한 것으로 보임.
- B 위원: 사진 자체가 상품판매에 영향이 작다고 하셨는데, 광고를 목적으로 한 사진을 타인이 이용한 경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사진 업종 종사자의 입장에서 영향이 클 것으로 생각됨.
- 오진해 전문위원: 현재 민원은 사진 업종 종사자의 입장에서 제기된 것은 아님.
- B 위원: 광고사진을 제외하면 판매의 정당성은 이해됨. '★★★★'이 저작권을 소유한 페이지 상단의 광고 사진은 제품판매와 관련성이 있는지 의문임.
- 오진해 전문위원: 먼저 민원인 측에 통화를 통해 확인한 바를 보고 드리면, '★★★★' 캘리포니아 매장에서 상품을 구매하는 형태로 병

행수입하고 있음을 확인받았음. 상품 설명페이지 또한 동일하게 안내하고 있음. 병행수입 안내 및 구매자들의 후기글을 보았을 때 판매되고 있는 제품 자체가 위조 상품으로는 판단되지 않음.

- B 위원: 이전 심의 안건 중, 팸플릿 내의 사진은 이미 인쇄된 상태였기 때문에 시정권고를 부결하였음. 해당 안건은 해당 사진만 교체하면 될 것으로 판단됨.
- 오진해 전문위원: 해당 업체의 고객센터 담당자로부터 이미지 스톡에서 계약한 이미지만 사용하고 있음을 전달 받았음. 다만 해당 부분을 소명자료를 통해 직접 확인을 한 상태는 아님.
- A 위원: 스톡 이미지라면 상표가 붙은 이미지를 판매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됨.
- 오진해 전문위원: 이미지를 구매한 후 상표를 별도로 붙인 것으로 보임.
- A 위원: 스톡 이미지를 구매하여 상표를 별도로 붙인 것이라고는 취신하기 어려움.
- 오진해 전문위원: 상품 판매 자체를 제한하는 것은 우리 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은 아니지만, 권리자의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광고 사진을 내리고 저작권을 준수해 달라는 요청은 전달하였음. 또한, 제품 판매 관계자 측에서도 담당자를 통해 권리여부를 다시 확인하고 삭제를 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왔음. 실제로 권리

를 받아 사진을 이용하고 있는 사안이라면 시정권고의 대상으로 보기에 어려울 것임.

- A 위원: 제품 판매 관계자 측에서 입장을 일부 양보했다는 의미인지?
- 오진해 전문위원: 그렇지 않음. 단순히 고객센터 담당자는 사실관계를 정확히 알지 못하므로, 권리자로부터 제기된 문제를 직접 업무를 담당하는 자를 통해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다는 취지임.
- B 위원: 기존 제품 판매 사진 게시물과 관련한 심의 안건에 대해 삭제 또는 전송중단의 시정권고가 이루어질 경우 제품 판매자의 영업 활동이 제한되기 때문에 부결하였지만 해당 안건은 그렇지 않은 것으로 생각됨. 상황에 따라 달리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임. 문제 제기된 광고 사진만 삭제하거나 다른 사진으로 대체한다면 영업 활동이 제한되지 않을 것임.
- 오진해 전문위원: 시정권고의 대상은 URL 단위로 이루어짐.
- B 위원: 판매글 게시자가 광고사진을 교체하면 시정 조치 한 것이 아닌지?
- 오진해 전문위원: 시정권고는 OSP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OSP는 해당 게시물 URL을 비공개 처리 하게 됨.
- A 위원: 전문위원 말씀은 시정권고 대상은 '★★'이 되는 것이고 '★'

★'은 기계적으로 URL을 삭제한다는 것인지?

- 오진해 전문위원: 그러함.
- B 위원: '★★'은 판매글 게시자에게 광고 사진을 삭제하도록 하면 그것이 시정권고 아닌지?
- 오진해 전문위원: '★★'은 판매글 게시자에게 경고를 하고 해당 URL에 대해서 비공개 처리함. 사진만 삭제하는 것은 게시물의 수정으로, 시정권고의 이행 방법이 아님.
- B 위원: 시정권고 제도 운영 취지를 생각하면 불법복제물이 유통되는 것을 차단하는 것이 목적이라 할 것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정 조치 된다면 그 목적이 달성된다고 판단됨.
- 오진해 전문위원: 법상에 정해져 있는 내용을 보면 삭제, 전송중단, 이용자에 대한 경고로 되어있음. 해당 저작물이 불법복제물인지 확실하지 않은 등의 사유로 시정권고가 적절하지 않은 경우에도, 저작권 보호의 취지를 간접적으로 달성하도록 자발적인 삭제를 안내하는 경우는 있으나 이는 보호원과 심의위원회의 권한은 아님. 이러한 사항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시정권고한다면 상품 판매에 대해서 영업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문제가 있음.
- A 위원: 법상에 URL단위로 삭제하라고 하는 조문이 있는지?
- 오진해 전문위원: 법조문에서 '게시물'이라 하면, 그 단위를 URL로

해석하고 있음. 시정권고 심의의 취지는 불법복제물의 빠른 확산을 저지하기 위함임. 불법복제물이 포함되어 있거나 저작권 침해사실이 있다고 무조건 시정권고하는 것은 그 취지에 맞지 않다고 할 것임. 쇼핑물 사진은 웹하드나 포털 내 블로그의 불법복제물과 성격이 다르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람.

- B 위원: 시정권고 하는 방법 중에 게시물 내에서 문제가 된 불법복제물만을 삭제토록 하는 시정권고가 가능한지를 묻고 싶음.
- 오진해 전문위원: 본 위원은 어렵다는 의견임.
- 이숙형 사무처장: 해당 안건은 전체위원회에 회부하는 것은 어떠하신지?
- 오진해 전문위원: 전체위원회에 논의안건으로 상정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임.
- A 위원: OSP에게 시정권고를 하면서 불법복제물 단위가 아닌 URL 단위의 시정권고 하는 것으로 잘못 전달된 것으로 판단됨. OSP측에서 게시물 게시자에게 문제의 불법복제물을 삭제하고 게시하도록 권고하면 될 것임.
- 오진해 전문위원: 게시물을 삭제하고 다시 게시하도록 하는 경우 여러개의 제품 후기 등 영업내역도 같이 삭제되기 때문에 영업의 자유에 제한이 생길 것으로 생각됨. 또한 게시물 수정권고 등의 방식으로 시정권고할 경우 만약 게시물 게시자가 OSP의 안내를 받고도

문제의 불법복제물을 삭제하지 않는다면 그 법적 책임은 OSP가 지게 되는 문제가 있음.

- B 위원: 쇼핑몰 판매 게시물 내의 저작권 침해 저작물에 대해서 영업활동에 제한이 있는 경우 일률적으로 시정권고 부결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른 시정권고 하는 것에 대한 검토와, 게시물 전체가 아닌 포함된 불법복제물만 삭제하는 것도 시정권고의 내용으로 포함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확인해 주시기 바람.
- A 위원: 해당 안건을 경고의 시정권고 가결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나, 기존 심의위원회의 입장과 대치되는 입장이어서 부결하는 것이 적당하다는 의견임.
- 오진해 전문위원: 저작권 침해가 명백한 게시물에 대해서도 쇼핑몰 게시물의 사진의 경우 부결하는 것이 대부분이었음. 해당 안건의 경우 광고사진이 저작권을 침해한 것인지조차 명확히 알 수 없는 상황을 고려하여 경고의 시정권고할 근거는 없을 것임.
- C 위원: 해당 안건의 광고 사진을 스톡에서 구매했다고 한다면, 증거가 있지 않은지?
- 오진해 전문위원: 우리 위원회가 법원과 같이 증거물들을 요구하여 심의하고 있지는 않음. 대부분의 심의 안건들은 권리증명이 필요 없는 명백한 불법복제물들임. 본 안건과 같은 경우에 대해 시정권고 심의를 위해 증거 제출까지 요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임. 권리자가 직접 저작권법에서 저작권을 보호하는 본지에 맞게 직접

권리를 행사하도록 하는 취지에서 부결하고 있음.

- B 위원: 해당 안전과 같은 이슈에 대해 검토가 조금 필요해 보임. 구두로 삭제의견은 전달 된 것인지?
- 오진해 전문위원: 그러함. 제품 판매글 게시자에게 저작권 침해사실이 있음에도 삭제조치가 없을 경우 권리자 측에서 다른 법적대응이 이어질 수 있다는 취지의 전달과 저작권법 준수에 대한 안내를 하였음.
- 신창환 분과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모니터링 자료, 심의대상 게시물, 그리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바탕으로 안전번호 제 2021-3799호에 대해 의결해주시기 바람.
- B 위원: 심의대상 게시물의 제품 사진과 관련하여 제품 판매 관계자 측에서도 담당자를 통해 권리어부를 다시 확인하고 삭제를 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왔다고 하기에 이번 게시물에 대한 시정권고는 부결하는 것이 좋겠음.
- C 위원: 시정권고가 이루어질 경우 제품 판매자의 영업 활동이 제한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심의대상 게시물은 시정권고의 대상으로 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보임으로 부결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됨.
- A 위원: 위원님들 의견에 동의하는 바임.

- 신창환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안전번호 제2021-3799호는 게시물에 대해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는 것에 대해 부결함.
- 오진해 전문위원:(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안전번호 제2021-3800호~3804호는 실명의 민원인이 신고한 건임. '★★★' 블로그 및 카페에서 일본 영상물의 불법복제물을 비디오 스트리밍 형태로 블로그 또는 카페에 게시한 사안임.
(제2021-3800호 심의대상 게시물에 직접 접속하여 보여주면서)방송 '★★★★★'을 제공하고 있음. 한화 전체 분량을 21분 12초 분량으로 나누어 제공하고 있음. 현재 페이지는 접근이 제한되어 있음. 채증자료를 보면 애니메이션을 지속적으로 공유하고 있는 카페로 보임.
(제2021-3801호 심의대상 게시물에 직접 접속하여 보여주면서)일본 애니메이션 '★★★★★★★'를 무자막으로 제공하고 있음. 한화 전체 분량인 24분 45초를 제공하고 있음.
(제2021-3802호 심의대상 게시물에 직접 접속하여 보여주면서)일본 애니메이션 '★★★★★★★' 1~25화를 우리말 자막과 함께 제공하고 있음. 한화 전체 분량인 24분 45초를 제공하고 있음.
(제2021-3803호 심의대상 게시물에 직접 접속하여 보여주면서)일본 애니메이션 '★★★★★★★'를 무자막으로 제공하고 있음. 8분 59초, 11분 50초로 나눠 제공하고 있음.
(제2021-3804호 심의대상 게시물에 직접 접속하여 보여주면서)일본 드라마 '★★★★★'을 우리말 자막과 함께 제공하고 있음. 1화~12화를 스트리밍 방식으로 제공하고 있음.

(해당 안전표를 제시하면서)불법복제물명, OSP명, 게시자명, 특이사항 등은 검토보고서의 안전표에 정리되어 있음. 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람.

- A 위원: 안전번호 제2021-3800호 게시물은 접근제한 되어있지만 실제로 게시물이 삭제되어 있는지는 알 수 없고 계속 게시되어 있을 가능성이 낮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 신창환 분과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모니터링 자료, 심의대상 게시물, 그리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바탕으로 안전번호 제2021-3800호~3804호에 대해 의결해 주시기 바람.
- 참석 위원 전원: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함)
- A 위원: 제2021-3800호 안전의 게시물이 실제로 삭제되어 있는지 알 수 없고 나머지 심의대상 게시물이 해당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고 보기 어려움.
- B 위원: 심의대상 게시물에 대해 시정권고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함.
- C 위원: 같은 생각임. 가결 의견임.
- 신창환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안전번호 제2021-3800호~3804호는 게시물에 대해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시정권고

를 하는 것을 가결함.

- 오진해 전문위원: (불법복제물 제공화면, 파일 다운로드 화면, 불법복제물 재생화면을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202-3805호~5199호는 모두 불법 복제한 음악, 게임, 출판물, 컴퓨터 프로그램, 만화, 영상물을 웹하드 등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공중의 이용에 제공한 사안임.

(심의안건 목록을 제시하면서)일부 안건을 별도로 설명하겠음. 나머지 안건들은 위원님들께서 각자 PC로 접속하여 확인해 주시기 바람.

(영화 '주술회전' 관련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2021-4289호는 모바일 웹하드에서 만화 '주술회전'을 모바일 웹하드에서 110포인트로 판매중임. 최근 애니메이션이 방영되고 있어 만화책 불법복제물이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보임. 저주를 없애기 위해 저주가 된 소년의 되돌릴 수 없는 장렬한 이야기를 그린 애니메이션임.

(영화 '차인표' 관련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2021-4485호는 모바일웹하드 에서 160포인트로 판매중임. 2021. 1. 1. 개봉한 영화 '차인표'를 무료로 제공한 사안임. 현재 넷플릭스에서 독점 제공하고 있음. 왕년의 슈퍼스타 차인표. 지금은 연기 4대 천왕에 끼고 싶지만 낄 수 없는, 열정만 가득한 몸짱 배우일 뿐이다. 그의 오랜 철학인 '진정성' 있는 아웃도어 광고를 위해 직접 등산복을 입고 산에 올라간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사고에 휘말리고, 우연히 들어간 체육관이 붕괴되면서 난데없이 갇히게 되면서 일어나는 이야기인 코미디 영화임.

(영화 '내가 죽던 날' 관련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2021-4758호는 웹하드에서 영화 '내가 죽던 날'을 2020. 11. 12. 개봉하여 현재 관객수 23만명을 기록함. 워너브러더스코리아에서 배급함. 김혜수, 이정은, 노정의가 주연으로 태풍이 몰아치던 밤, 외딴섬 절

벽 끝에서 유서 한 장만을 남긴 채 소녀가 사라진다. 오랜 공백 이후 복직을 앞둔 형사 '현수'는 범죄 사건의 주요 증인이었던 소녀의 실종을 자살로 종결짓기 위해 주인공의 분투를 그린 영화임.

- 신창환 분과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심의안건 목록을 확인하시어 안전번호 제2021-3805호~5199호에 대해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참석 위원 전원: (심의안건 목록과 보호원이 제출한 자료를 확인함)
- 참석 위원 전원: 안전번호 제2020-3805호~5199호는 모두 불법 복제된 음악, 게임, 출판물, 컴퓨터 프로그램, 만화, 영상물을 웹하드 등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공중의 이용에 제공한 사안으로 특별한 쟁점 없이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시정권고의 필요성이 인정됨. 다만, 그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되어 있는 게시물에 대하여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이 타당함.
- 신창환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안전번호 제2021-3805호~5199호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고, 나머지 게시물에 대해서는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경고의 시정권고를 하는 것으로 의결함.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는 아래와 같이 의결함)

“만장일치로 안전번호 제2021-3799호는 시정권고 부결하고, 제2021-3799호를 제외한 제2021-3792호~5199호는 불법복제물등의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그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를 가결하되,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가결함.

4. 폐회 선언

- 신창환 분과위원장이 제5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폐회를 선언함.

2021년 제5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이
상기와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2021. 1. 21.

분과위원장 신창환

위원 김연희

위원 심장섭